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562
----------	------

2025년 4월 22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3월 31일, 최민규 의원 (찬성자 34명)

나. 회부일자 : 2025년 4월 2일

다. 상정일자 : 제33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25년 4월 22일 상정,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최민규 의원)

가.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 및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자를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내부에만 게시토록 하고 ‘외부게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외부게시 조항 삭제(안 제7조 제2항)
- 운영자 증명서의 시설물 외부게시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삭제(안 별지 제7호서식)

3. 검토보고요지 (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보도상영업시설물의 운영자 및 대리운영자(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정보가 게재된 운영자증명서의 외부 게시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시장이나 관리자¹⁾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로 하여금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 ----- ----- ----- ----- 별지 제6호 ----- ----- ----- ----- -----.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 -----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물 이전) ① (생략)	제8조(시설물 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 ~ 바. (생략) 바.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③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별지 제6호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운영자 증명서(내부용)</td> </tr> <tr> <td>...(생략)...</td> </tr> </table> [별지 제7호서식]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7.30.>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운영자 증명서(외부용)</td> </tr> <tr> <td>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영자 천연색사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성명>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td> </tr> <tr> <td>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td> </tr> </table>	()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생략)...	()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영자 천연색사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성명>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운영자 증명서</td> </tr> <tr> <td>...(생략)...</td> </tr> </table> <삭제>	() 운영자 증명서	...(생략)...
()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생략)...								
()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영자 천연색사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성명>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 운영자 증명서								
...(생략)...								

1) 제2조(정의) 7. "관리자"란 제15조에 따라 시장이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을 말한다.

■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현황

- 보도상영업시설물은 신문, 잡지, 교통카드 등을 판매하는 ‘가로 판매대’와 구두를 닦고 수선하는 ‘구두수선대’ 등 시장으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현재 서울시 내에는 총 1,245개 시설물(가로판매대 512개, 구두수선대 733개)이 운영중에 있음.

[표] 서울시 보도상 영업시설물 연도별 증감 현황 ('24.1.31.기준)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1,671	1,552	1,443	1,391	1,276	1,245
가로판매대	728	670	613	558	529	512
구두수선대	943	882	830	803	747	733
증감(전년대비)	△93	△119	△109	△52	△115	△31

- 서울시는 시민 보행권 우선 원칙에 따라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신규 시설물을 보도에 추가 설치할 수 없도록 관리²⁾하고 있으며,
- 허가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운영자 외에 운영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중 등록된 1인만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제한³⁾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매, 전대 등 제3자에게의 권리 이전을 일절 금지⁴⁾하고 있음,

2) 제12조(시설물 철거) ③ 누구든지 2001년 8월 1일(조례 제3889호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허가된 시설물 이외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 취소되어 철거된 시설물을 대신하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3)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별지 제6호 및 제7호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다.

4) 제9조(행위의 금지) ① 운영자는 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로 인한 권리나 의무를 제3자에게 전매, 전대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임의로 점용허가 장소를 변경할 수 없다.

- 이에 현행 조례는 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⁵⁾토록 하고,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는 벌점부과, 허가취소, 계약 해지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에서 규정⁶⁾하고 있음.
- 또한, 시설물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운영자와 대리운영자 1명의 정보가 작성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의 내부와 외부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⁷⁾토록 하여 운영상태 점검 시 운영자의 신원 확인을 용이하도록 하고, 나아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들도 운영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최근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강조됨에 따라 시설물 외부에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통해 운영자의 사진 및 인적사항이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사생활 침해 및 개인

5) 제7조(시설물 관리) ⑤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 관계법령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여 영업을 한 운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제10조(벌점 등) 시장은 이 조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원상회복명령 등과 별도로 벌표 2에 따라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허가기간 중 누적벌점이 120점 이상이 되는 경우 즉시 점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벌점·누적벌점과 관계없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위치 조정 및 교체 등을 거부하는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 제9조제2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해당 허가기간 내에 제9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의 시정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5.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6. 대부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제11조의2(대부계약의 해제·해지)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자와의 대부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운영자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지 않아 시장이 3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납부토록 최고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료를 내지 않은 경우
2. 거짓 증빙서류의 제출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을 대부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3. 「도로법」 제63조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4. 조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7) 제7조(시설물 관리)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문제가 지적⁸⁾되고 있는 상황임.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7.30.>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7.30.>									
()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장소 구 (도로명)(건물번호)앞 (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 영 자 <table border="1"> <tr> <td>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td> <td>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td> </tr> <tr> <td>< 성 명 ></td> <td>< 성 명 ></td> </tr> <tr> <td><운영자 본인></td> <td><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td> </tr> </table> 위 사람은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 ○ 구 청 장 [직인]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 성 명 >	<운영자 본인>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 영 자 <table border="1"> <tr> <td> 천 연 색 사 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td> </tr> <tr> <td>< 성 명 ></td> </tr> <tr> <td>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td> </tr> </table>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 울 특 별 시 ○ ○ 구 청 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천 연 색 사 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 성 명 >									
<운영자 본인>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천 연 색 사 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운영자증명서(내부용) 서식

운영자증명서(외부용) 서식

[그림] 운영자증명서 서식

8) 운영상태 현장점검 시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운영자들의 다수 민원 발생(보행환경개선과).

■ 개정안에 대한 의견

- 먼저, 안 제7조제2항은 운영자증명서의 외부 게시 의무를 삭제하여 시설물의 내부에만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도록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토록 하려는 것으로,
- 운영자의 성명과 사진 등이 기재된 운영자증명서의 외부 게시로 인해 불특정 다수에게 개인정보⁹⁾가 노출되고, 사생활 침해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만큼 이를 반영하여,
- 외부 게시를 없애는 대신 시장 또는 관리자가 시설물의 운영 상태를 점검할 때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 제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
- 현행 조례는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게시토록 하여 시설물의 운영자 및 등록된 대리운영자가 아닌 불법전대 등 타인의 무단 운영을 방지하는 효과를 고려한 조치로 여겨지나 실내에 부착된 운영자증명서를 통해서도 충분히 관리자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운영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고,
- 보도상영업시설물이 시민 누구나 접근 가능한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만큼 운영자증명서를 외부 게시하는 것은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는 문제 및 사생활 침해 우려를 낳고 있어 실제 현장에서는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 일부가 외부 또는 내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부에 운영자증명서를 게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 본 개정안이 외부 게시만이라도 폐지하려는 것은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과 과도한 의무 규정에 따른 조례 위반 유발 문제 해소를 위해 바람직한 조치라 사료됨.

[표] 최근 5년간 보도상 영업시설물 점검내역, 시정명령 내역

(단위: 개, 건 / '24.12.31기준)

점검 년도	점검 대상	적발 건수	적 발 내 용				비 고 (기타 적발내역)
			운영자 증명서 내외부 미게시	타인 운영	전매 전대	기 타	
2020	1,671	343	1	23	0	305	사전승인 없이 15일 이상 폐점, 시설물훼손, 청결유지 의무위반, 주류판매, 무단적치, 점용면적초과, 장기폐점, 음식 조리·판매, 허가품목 외 판매, 소화기 미비치 등
2021	1,552	328	28	98	3	198	
2022	1,443	316	141	52	0	123	
2023	1,391	216	13	33	0	172	
2024	1,310	325	77	30	6	175	

- 또한, 운영자증명서의 내부 게시와 동시에 현장점검 시 운영자의 신원을 보다 철저히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자증명서 및 신분증 제시 의무를 조례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에 따라 시설물 운영점검 및 운영자 확인절차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서울시는 지난 3월 17일 ‘약자와의 동행 실천 규제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규정 완화(규제철폐75호)를 발표하고 이를 추진 중인 점을 고려할 때, 본 개정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정책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운영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실효성 있는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다 하겠음.

- 다만, 최근 5년간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점검 내역을 살펴보면 운영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무단 운영, 전매 또는 전대 사례가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실정임을 고려할 때,
- 운영자증명서의 외부 게시 의무가 삭제될 경우, 운영 실태 점검에 대한 관리·감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하고 지속적인 현장점검이 필요해 보임.
- 또한, 부정운영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을 엄히 적용하는 등 강력한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마지막으로, 별지 제7호 삭제는 운영자증명서 외부 게시 의무가 삭제됨에 따라 해당 서식을 폐지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제1항과 별지 제6호서식은 이에 따른 관련 문구 정비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 략

5. 토론요지 : 없 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해당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석위원 전원 찬성)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민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562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3월 31일

발 의 자: 최민규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태수,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춘선, 봉양순,
서상열, 신동원, 신복자,
옥재은,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종복, 이봉준,
이원형, 이희원, 정준호,
정지웅, 허 훈, 홍국표,
황철규 의원(34명)

1. 제안이유

- 현행 조례는 보도상영업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내부 및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토록 하고 있으나, 운영자를 보도상영업시설물 이용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로부터의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내부에만 게시토록 하고 ‘외부게시’ 조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자증명서 외부게시 조항 삭제(안 제7조제2항)
- 나. 운영자 증명서의 시설물 외부게시 의무 조항 삭제에 따른 관련 별지 서식 삭제(안 별지 제7호서식)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타 : 신 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호제1항 전단 중 “별지 제6호 및 제7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중 “바.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을 “사.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 운영자 증명서	
○ 관리번호	
○ 운영기간	. . . ~ . . .
○ 장 소	구 (도로명) (건물번호) 앞 (주요건물 기재)
○ 취급품목	
○ 운 영 자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천 연 색 사 진 (가로5cm×세로7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 명 >	< 성 명 >
<운영자 본인>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위 사람은 () 운영자임을 확인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뒷면)

유 의 사 항

1. 운영할 때는 반드시 이 증명서를 게시하여야 하며, 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자는 시설물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2. 도로점용 허가 및 시설물의 사용 권리·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전대·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임의로 장소를 이전해서도 아니 됩니다.
3. 운영자는 도로점용허가 및 시설물 대부계약의 내용 및 조건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수정안
제7조(시설물 관리) ① 시장은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관리현황을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운영자 준수사항을 일반시민이 보기 쉽도록 시설물에 부착하고 <u>별지 제6호 및 제7호</u> 서식에 따른 운영자증명서를 운영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운영자증명서에 운영자와 운영자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중 1명의 사진을 첨부하여 등재하여야 하며, 운영자증명서에 등재된 사람만이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 ----- ----- ----- ----- ----- ----- <u>별지 제6호</u> ----- ----- ----- ----- -----.
② 운영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운영자증명서를 시설물 <u>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u>	② ----- ----- <u>내부에</u> ----- <u>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u>
③ ~ ⑥ (생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시설물 이전) ① (생략)	제8조(시설물 이전)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물을 과밀시설물 또는	② ----- -----

위치부적정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물의 이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위치부적정 시설물

가. ~ 바. (생략)

바.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③ (생략)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별지 제6호서식)

() 운영자 증명서(내부용)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7.30.>

() 운영자 증명서(외부용)

- 관리번호
- 취급품목
- 운영자

천연색사진 (가로9cm×세로12cm)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
--

<성명>

<운영자 또는

대리운영자(운영자와의 관계)>

※ 이 시설물은 조례 제5922호에 따라 위와 다른
사람이 운영할 수 없습니다.

서울특별시 ○○구청장 [직인]

(신고처 : ○○구청 ○○과 ☎ 02-0000-0000)

※규격 : 17cm × 20cm

-----.

1. (현행과 같음)

2. -----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

③ (현행과 같음)

[별지 제6호서식] 운영자 증명서

(별지 제6호서식)

() 운영자 증명서
...(생략)...

<삭제>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호제1항 전단 중 “별지 제6호 및 제7호”를 “별지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내부와 외부의 지정된 장소에 각각 게시하여 누구나 이를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를 “내부에 게시하여야 하고, 시장이나 관리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운영자증명서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 제8조제2항제2호의 각 목 중 “바.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을 “사. 그 밖에 시민불편을 야기하여 이전이 필요한 시설물”로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서울시의 재정 수입 순감소나 재정 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병준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 계 분 석 관	김지혜

☎ 02-2180-7952
e-mail : kjh0123@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